

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해야 합니다

◉ 2021년부터 30~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◉



01 도입배경

▶ 달력의 “빨간날”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,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,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

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.('18.3.20, 근로기준법 개정)

02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

▶ 민간기업에서도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
공휴일	▶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▶ 1월 1일 ▶ 설·추석 연휴 3일 ▶ 부처님오신날 ▶ 기독교탄신일 ▶ 어린이날 ▶ 현충일 ▶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▶ 기타 수시 지정일(임사공휴일)
대체공휴일	설·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(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)

*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

03 시행시기

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.

- ▶ (2020.1.1.~)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
- ▶ (2021.1.1.~) 근로자 30~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
- ▶ (2022.1.1.~) 근로자 5~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

04

휴일대체

❖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,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**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(휴일대체)**할 수 있습니다. (법 제55조제2항 단서)

이 경우 ① **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** 해야 하며(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),
② **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**해야 합니다.

*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

❖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**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.**

05

휴일수당

❖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**근로자가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근로를 했다**면 **휴일근로 가산수당***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

* 1일 8시간 이내는 50% 가산,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% 가산(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)

❖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,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,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, **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.**

* 예) 광복절(8.15.)을 8.17.로 휴일대체 했다면,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.17.이 휴일이 됨

한편, **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**

◆ 법 시행일 전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

* 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일 전 (30~299인 기업은 2020.12.31.까지, 5~29인 기업은 2021.12.31.까지)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고(취업규칙 등 증빙 제출)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을 준수한 기업

참고

관련 법령

▶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
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.

▶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(휴일)

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”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호(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.

1

지원방향

-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0인미만 유급휴일 전환 기업 지원, 조기도입한 5~29인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
-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하고, 각 부처에서는 확인서를 토대로 지원

<확인서 발급 개요>

대상	30~299인	'20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, '21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 ['21.1~3월 확인서 발급]
	5~29인	'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, '22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('21년 중 준수기업은 "조기단축" 인정) ['21년 중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, '22.1~3월 확인서 발급]
절차	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→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→ 기업은 지원정책 소관부처에 확인서 제출 → 각 부처에서 확인 후 지원	

2

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

1. 재정 지원

-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<고용부>
- 공모형 고용장려금(6개 사업) 신청 시 가점(5점) 부여

<공모형 고용장려금 현황>

고용 창출 장려금	일자리 함께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교대제 개편,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▪ (지원) 증가근로자 1인당 1~2년간 월40~80만원,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비용(월 최대40만원)
	국내복귀 기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국내복귀기업 사업주 ▪ (지원) 증가근로자 1인당 2년간 월40~80만원
	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한 사업주 ▪ (지원) 증가근로자 1인당 월40~80만원
고용 안정 장려금	정규직 전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6개월~2년 근속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 ▪ (지원) 전환근로자 1인당 1년간 임금증가 보전금(월최대 60만원), 간접노무비(월30만원)
	일·가정 양립 개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, 선택근무, 재택·원격 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 ▪ (지원)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1년간 520만원 지원 * (주 1~2회) 1주당 5만원, (주 3회 이상) 1주당 10만원
	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대상)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 ▪ (지원)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× 6개월

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선정 시 우대 지원(가점부여)<중기부>

<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주요내용>

- (개요)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oT, 5G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의 도입을 지원
- (지원내용)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
 - 기초(생산정보 디지털화) : 0.7억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% 이내
 - 고도화1(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) : 2억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% 이내
 - 고도화2(생산공정 실시간 제어) : 4억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% 이내

□ 농·식품분야 인력지원 우대<농림부>

- 식품 및 외식기업 청년인턴십(‘20년 400명),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우선 지원

* 3개월은 월 9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%, 6개월은 월 100만원 한도

□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* 우대 지원(‘20년 37억원)<문체부>

* 마케팅, 회계,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

2. 정책자금 지원

□ 관광기금 운영자금 용자 우선 배정<문체부>

* '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에 전체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

□ 스포츠 운전(경영)자금 용자우선 배정<문체부>

* '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에 전체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

3. 구인 지원

□ 구인이 어려운 제조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(2년)<고용부>

-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*으로 보아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20% 상향 적용

* 현재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한도 20% 상향 적용
(고용허용한도 20% 상향 업종·지역은 기존 상향비율에 20%를 추가 상향)

-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(최대 5명)

<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제조업 규모별 고용허용한도(E-9) 상향(안) >

내국인 피보험자수	총 고용허용인원				연간 신규고용한도 (총고용한도內)	
		20% 상향 (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)	40% 상향 (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+업종or지역)	60% 상향 (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+업종&지역)		내국인 채용 시
11 ~ 30명	10명	12명	14명	16명	4명	+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
31 ~ 50명	12명	14명	17명	19명		
51 ~ 100명	15명	18명	21명	24명	5명	
101 ~ 150명	20명	24명	28명	32명		
151 ~ 200명	25명	30명	35명	40명	6명	
201 ~ 300명	30명	36명	42명	48명		

고용센터 일자리 우선 매칭<고용부>

- (온라인) 워크넷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(구인·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)
- (오프라인) 구인·구직 만남의 날, 고용지원 순회 출장센터 등 지원

4. 기타 지원

일터혁신 컨설팅* 신청 시 우선 선정<고용부>

* 8~21주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·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
(△근로시간 단축, △작업조직·환경개선, △노사파트너십 증진,△임금·평가 개선 등)

- 특히 어려움이 많은 숙박·음식점업, 운수·창고업, 보건·사회 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

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*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<고용부>

* 20인 미만 영세·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
⇒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20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
「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」을 통한 노무전문가 무료상담(2~3회 기업 방문 및 상담) 우선 지원<고용부>

3

5~29인 기업 조기도입 추가 인센티브

※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+ 추가 인센티브 부여

(공공조달 가점)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<기재부·행안부>,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가점 부여 검토<중기부>

- (정책자금 우대)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공휴일 조기도입 기업까지 확대하고, 금리 우대<금융위>

<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>

기관명	지원 대상	금리인하
산 은	고용우수기업, 고용창출우수산업, 고용창출인증기업, 세제상 고용확대기업,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	△0.5%p
기 은	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,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	△0.3 ~ 1.0%p
수 은	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% 이상인 기업	△0.5 ~ 0.9%p
	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	△0.3%p

-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우대 적용 (0.2%p 차감)<금융위>
- (외국인력 가점)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(2점)<고용부>
* "노동시간 조기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"에 가점
- (산재보험료 할인)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% 경감<고용부>
(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업장)
- (관세조사 유예) 관세조사 대상에서 1년간 제외<관세청>
* 다만, 4년 이내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받은 기업 등은 지원 제외
- (포상 등) 가족친화기업 인증,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심사 시 가점<고용부>

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 구역 및 연락처

지방관서	관할 구역	대표 연락처
서울청	서울 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	02-2231-0009
서울강남지청	서울 강남구	02-584-0009
서울동부지청	서울 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	02-403-0009
서울서부지청	서울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	02-713-0009
서울남부지청	서울 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	02-2639-2100~5
서울북부지청	서울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	02-950-9880
서울관악지청	서울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	02-3281-0009
중부청	인천 중구, 동구, 남구, 연수구, 남동구, 옹진군	032-460-4545
인천북부지청	인천 부평구, 계양구, 서구, 강화군	032-540-7910
부천시청	경기 부천시, 김포시	032-714-8700
의정부지청	경기 의정부시, 포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, 강원 철원군	031-877-0009
고양지청	경기 고양시, 파주시	031-931-2800
경기지청	경기 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	031-259-0204
성남지청	경기 성남시, 광주시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, 양평군	031-788-1505
안양지청	경기 안양시, 과천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	031-463-7300
안산지청	경기 안산시, 시흥시	031-412-1992
평택지청	경기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	031-646-1114
강원지청	강원 춘천시, 화천군, 홍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경기 가평군	033-269-3551~2
강릉지청	강원 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고성군, 양양군	033-650-2500
원주지청	강원 원주시, 횡성군	033-769-0800
태백지청	강원 태백시, 삼척시	033-550-8630
영월출장소	강원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	033-374-0009
부산청	부산 중구, 동구, 서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, 사하구	051-853-0009
부산동부지청	부산 동래구, 금정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	051-559-6688
부산북부지청	부산 중구, 사상구, 강서구	051-309-1500

지방관서	관할 구역	대표 연락처
창원지청	경남 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	055-239-6500
울산지청	울산시	052-272-0009
양산지청	경남 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	055-387-0009
진주지청	경남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	055-752-0009
통영지청	경남 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	055-650-1951
대구청	대구 중구, 수성구, 북구, 동구, 경북 경산시, 영천시, 군위군, 청도군	053-667-6200
대구서부지청	대구 남구, 서구, 달서구, 달성군, 경북 고령군, 칠곡군, 성주군	053-605-9000
포항지청	경북 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주군	054-271-6700
구미지청	경북 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국가산단)	054-450-3500
영주지청	경북 영주시, 상주시, 문경시, 봉화군	054-639-1111
안동지청	경북 안동시, 예천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	054-851-8000
광주청	광주, 전남 나주시, 화순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	062-975-6200
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	제주도	064-728-6100
전주지청	전북 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무주군, 장수군, 진안군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	063-240-3400
익산지청	전북 익산시, 김제시	063-839-0008~9
군산지청	전북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	063-452-0009
목포지청	전남 목포시, 신안군, 진도군, 무안군, 영암군, 해남군, 장흥군, 강진군, 완도군	061-280-0100
여수지청	전남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보성군, 고흥군	061-650-0108~9
대전청	대전, 세종시, 충남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	042-480-6290
청주지청	충북 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	043-299-1114
천안지청	충남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	041-560-2800
충주지청	충북 충주시, 제천시, 음성군, 단양군	043-840-4000
보령지청	충남 보령시, 서천군, 부여군, 홍성군, 청양군	041-931-6640
서산출장소	충남 서산시, 태안군	041-661-5630